

意匠 審査 基準 解説(3)

意匠 審査基準 正作業을 마치고

第三章. 意匠登錄要件(法 第5條)

1. 序

우리나라의 意匠法은 다른 工業所有權制度와 마찬가지로 先願主義, 審査主義, 登錄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따라서 意匠登錄出願이 있으면 意匠權의 設定 登錄에 앞서 特許廳에서는 登錄適格與否에 대한 審査가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審査에는 形式的 要件을 審査하는 소위 方式 審査와 特許廳 審査官이 實際로 出願意匠이 登錄의 對象이 되느냐 與否를 確認하는 實體審査가 있는데 意匠審査基準에서는 實體審査에 關해서만 規定되어 있다.

意匠法 第5條에서는 工業上 利用할 수 있는 意匠을 考案한 者는 다음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고 規定되어 있다.

登錄對象에서 除外되는 意匠

가. 意匠登錄 出願前에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實施된 意匠

나. 意匠登錄 出願前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意匠

다. 前 “가” 및 “나”의 意匠에 類似한 意匠

라. 公知 公用의 意匠 또는 周知의 形狀 模樣 등에 依하여 容易하게 創作할 수 있는 意匠

이를 다시 풀이하면 意匠이 登錄되려면

가. 工業上 利用할 수 있어야 하며(意匠의 工業性)

나. 意匠의 表現이 具體적이어서 그대로 工業의 實現이 可能하여야 하며(意匠의 具體性)

다. 意匠登錄出願前에 公知 公用되지 않았어야 하며(意匠의 新規性)

라. 公知 公用의 意匠과 類似하지 않아야 하며(類似하지 아니한 意匠)

마. 公知의 意匠이나 周知의 形狀 模樣등으로부터 容易하게 創作할 수 있는 範圍가 아니어야 한다(意匠의 創作性).

2. 意匠의 工業性

意匠法 第1條에서 「이 법은 意匠考案의 保護 및 利用을 圖謀함으로써 意匠의 創作을 獎勵하여 國家産業의 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하여 이 법이 國家産業發展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을 分明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同法 第5條 第1項에서 「工業上 利用할 수 있는 意匠을 考案한 者는…」으로 規定하였으므로 意匠의 工業性은 意匠登錄의 必須要件이며, 工業성이 없는 意匠은 登錄對象에서 除外된다.

意匠이 工業上 利用할 수 있다는 것은 工業的으로 만들 수 있다는 意味로서, 換言하면 量産이 된다는 意味이기 때문에 이 「工業上 利用할 수 있다」라는 것은 「工業的 生産過程에서 同一物品이 量産 可能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意匠審査基準

1) 「工業上 利用할 수 있는 意匠이라 함은 工業的 生産方法에 依하여 同一物品이 量産可能한 것을 말한다.

○ 「工業的 生産方法」이란 그 生産方法이 機械에 依한 生産은 물론 手工業的 生産도 포함



安 文 煥
 <特許廳 意匠1課長>

■ 이달의 目次 ■

第3章. 意匠登錄 要件(法 第5條)

1. 序

2. 意匠의 工業性

3. 意匠의 具體性

<다음號에 繼續>

한다.

○「同一物品이 量産可能하다」는 것은 物理的으로 完全히 同一한 物品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一見하여 同一하게 보이는 程度의 同一性을 意味한다.

2) 工業的 生産方法에 依하여 量産이 可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意匠은 다음과 같다.

(가) 自然物을 意匠의 構成主體로 使用한 것으로서 多量生産할 수 없는 것

(나) 純粹美術의 分野에 屬하는 著作物

3. 意匠의 具體性

意匠制度는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意匠登錄의 範圍는 그 意匠登錄出願書의 記載事項 및 그 出願書에 添附된 圖面(또는 圖面代用 寫眞, 模型이나 實物見本)에 表現된 意匠에 依하여 定하여진다.

따라서 出願書의 記載事項 및 圖面등에 意匠이 正確히 表現되어 工業上 그대로 利用할 수 있어야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意匠의 登錄範圍에 애매모호한 點이 없어야 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出願書의 記載事項 및 圖面만으로 工業上 利用이 可能하고 登錄範圍가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는 圖面の 作成方法 및 意匠의 說明書 記載事項등에 그 意匠을 充分히 表現할 수 있는 統一된 約束이 必要하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約束대로 施行하면 그 意匠의 實施가 可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約束에 違反된 것은 意匠이 具體적으로 表現된 것이 아닌 것이며, 따라

서 意匠登錄의 對象에서 除外되어야 할 것이다.

가. 意匠審査基準

(1) 意匠의 表現이 具體적이 아니므로 工業上 利用할 수 없는 意匠은 다음과 같다(出願書의 記載事項 및 圖面으로서는 正確히 그 意匠을 把握할 수 없는 경우)

(가) 使用目的, 方法, 狀態등이 不分明한 것

(나) 圖面이 相互一致하지 아니하는 것

(다) 圖面, 寫眞, 본보기形 또는 實物見本등이 不鮮명한 것

(i) 圖面, 寫眞, 본보기形 또는 實物見本등이 지나치게 작거나 또는 鮮明하지 아니하여 意匠을 正確히 알 수 없는 것

(ii) 寫眞으로서 物品의 背景, 陰影, 他物品의 映像등이 적혀서 意匠을 正確히 알 수 없는 것

(라) 意匠이 抽象적으로 說明된 것

出願書 또는 圖面中에 文字나 符號 등을 使用하여 形狀, 模樣 및 色彩를 抽象적으로 說明한 것

(마) 材質 또는 크기의 說明이 必要한 境遇에 그에 關한 說明이 없는 것

(바) 色彩圖面의 一部에 着色하지 아니한 部分이 있는 것

다만, 圖面의 意匠의 說明欄에 無着色部分이 白色, 黑色 또는 透明이라는 것을 記載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사) 圖面中에 陰影, 指示線, 其他 意匠을 構成하지 아니하는 線, 符號 또는 文字등을 表示한 것

(i) 單純한 文字表示는 模樣으로 認定하지 아

니하므로 削除케 한다. 그러나, 物品의 使用上 不可缺의 것과 物品의 一部分에 表示되어 있는 商標나 商號 또는 其他 文字로서 意匠의 美感에 影響이 없는 것은 削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와 같이 商標나 商號 또는 其他文字를 意匠에 表示한 경우에는 意匠의 說明欄에 「○○圖의 ○○部分에 表示된 ○○文字는 意匠登錄의 對象에서 除外함」이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例) ① 使用上 不可缺의 것

○ 計器의 눈금으로 쓰여진 文字

○ 「UP」, 「DOWN」과 같이 特定의 物品에 반드시 쓰여지는 文字

② 商標, 商號, 其他 文字가 쓰여지는 例

○ TV의 前面구석에 작은 文字로 商標나 商號를 記入한 경우

○ 電氣用品의 구석에 작은 文字로 「이 機器는 110V 및 220V 兼용임」이라고 記載되어 있는 경우

(ii)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意匠을 構成하는 文字로 認定한다.

(ㄱ) 連續模様の 모티브(motif)로 쓰여진 文字

(ㄴ) 裝飾되어 있는 文字

○ 通常의 方法으로는 一見하여 認識하기 困難한 程度로 裝飾된 것

(아) 立體的인 物品을 表現하는 圖面이 다음에 該當하는 境遇

(i) 正投象圖法에 依하지 아니한 圖面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ㄱ) 大型機械 等の 寫眞으로서 正投象圖法에 의한 것과 같은 寫眞을 만들기 困難한 경우에는 斜視圖와 같이 만든 寫眞

(ㄴ) 模樣을 表現한 컵과 같이 模樣을 展開圖에 表現하는 것이 意匠을 正確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形狀을 正確히 展開할 수 있는 경우에 그 模樣部分의 展開圖와 模樣을 省略한 形狀을 表現하는 圖面을 併用한 圖面

(ii) 各 圖面의 縮尺이 相異한 圖面

(iii) 6面圖가 表現되지 아니한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面 以上の 圖面을 省

略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圖示한 圖面의 名稱을 記載한 右側에 괄호를 하고 그 事實을 記載하여야 한다.

(ㄱ) 正面圖와 背面圖가 同一 또는 對稱인 경우에는 그 背面圖

(ㄴ) 左側面圖와 右側面圖가 同一 또는 對稱인 경우에는 그 一方의 側面圖

(ㄷ) 平面圖와 底面圖가 同一 또는 對稱인 경우에는 그 底面圖

(ㄹ) 正面圖, 背面圖, 左側面圖 및 右側面圖가 同一한 境遇에는 그 背面圖, 左側面圖 및 右側面圖

(ㄱ) 大型의 機械등으로서 設置 또는 定置되어 있어 常時 下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底面圖

(iv) 其他 省略된 部分이 있는 경우에 그에 關한 說明이 正確히 記載되지 아니한 것

(자) 平面的인 物品을 表現하는 圖面이 다음에 該當하는 경우

(i) 各 圖面의 縮尺이 相異한 것

(ii) 2圖面(表面圖 및 裏面圖)가 없는 경우

다만, 表面圖와 裏面圖가 同一 또는 對稱이거나 裏面圖가 無模樣인 경우에 裏面圖를 省略하고 圖示한 圖面의 名稱을 記載한 右側에 省略되었다는 事實을 記載한 경우는 例外로 한다.

(iii) 平面的인 物品은 다음의 例와 같다.

織物地, 비닐지·벽지, 타올 및 손수건, 보자기, 표딱지(레테르) 및 包裝紙, 賞狀, 毛布等

다만, 植毛地와 같이 두께가 있거나 包裝用袋과 같이 重合部가 있어 使用時에 立體的인 것은 立體的인 것으로 取扱한다.

(차) 立體的인 物品으로서 形狀이 連續하는 것 또는 平面的인 物品으로서 模樣이 連續 또는 反復되어 連續하는 것은 圖面에 그 連續狀態를 알 수 있도록 圖示하지 아니하였거나(連續狀態의 一部를 反復하여 圖示할 것), 意匠의 說明欄에 形狀이나 模樣이 一方向 또는 四方向으로 連續하는 狀態에 대한 說明이 없는 경우(※)

(계속)